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034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김태호 · 이양수 · 백종현
윤영석 · 박충권 · 우재준
조경태 · 조배숙 · 강명구
정점식 · 주호영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5의 제목 중 “충전요금의”를 “충전요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kWh당 충전요금
2.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u>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7. (생 략)</p> <p><신 설></p> <p>② · ③ (생 략)</p> | <p>제96조의5(충전요금 등의 표시)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u>-----<u>표시하여야</u>-----.</p> <p>1. <u>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 kWh당 충전요금</u></p> <p>2. <u>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u></p> <p>3. <u>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8조(과태료)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